

##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-268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9. .  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### 1. 제안이유

2008. 8.22 미군이전관련 한시기구 설치협약이 완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행정  
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한시기구 1과 신설

- 한시기구 : 특별대책지역과 신설(존치기간 : 2008. 9. 1 ~ 2011. 8.31)
- 투자유치과의 사무중 종전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특별대책지역과로 조정

#### 나. 정원조정

- 9급 감 1 → 5급 증 1(상계조정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##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9호중 아목부터 과목까지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한시기구)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특별대책지역과를 둔다.

- 가. 주한미군 이전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
- 나. 미군공여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
- 다. 미군관련 사항 및 민간활동 지원업무
- 라.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
- 마. 영상문화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- 바.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추진

별표2의 5급란의 총계 “29”를 “30”으로 하고, 본청 “15”를 “16”으로 한다.

별표2의 9급란의 총계 “45”를 “44”로 하고, 본청 “28”을 “27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한시기구인 특별대책지역과의 존속기한은 2011년 8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동두천시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중 “ 주민생활지원과장”을 “주민생활지원실장”으로 한다.

②동두천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투자유치과장”을 “특별대책지역과장”으로 한다.

소관실과		총 무 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성명	총무과장 홍 현 섭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시정담당 박 승 조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정 영 만 2121, 2122

#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실과의 설치)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실·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~8.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9. 투자유치과                      가.~사.(생략)  <u>아. 주한미군 이전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</u>  <u>자. 미군공여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</u>  <u>차. 미군관련 사항 및 민간활동 지원 업무</u>  <u>카.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</u>  <u>타. 영상문화사업 전반에 관한사항</u>  <u>파.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추진</u>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3조(실과의 설치)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</p> <p>-----</p> <p>1.~8.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9. -----                      가.~사.(현행과 같음)  <u>〈삭제〉</u></p> <p><u>〈삭제〉</u></p> <p><u>〈삭제〉</u></p> <p><u>〈삭제〉</u></p> <p><u>〈삭제〉</u></p> <p><u>〈삭제〉</u></p> <p><u>〈삭제〉</u></p> <p><u>제3조의2(한시기구)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특별대책지역과를 둔다.</u>  <u>가. 주한미군 이전관련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</u>  <u>나. 미군공여지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</u>  <u>다. 미군관련 사항 및 민간활동 지원 업무</u>  <u>라.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</u>  <u>마. 영상문화사업 전반에 관한사항</u>  <u>바.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추진</u></p>

[별표 2]

##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13조제1항관련)

구 분	총 계	본 청	의회	직속기 관	사업소	동
<b>총 계</b>	<b>502</b>	<b>332</b>	<b>12</b>	<b>30</b>	<b>61</b>	<b>67</b>
정무직 계	1	1				
시 장	1	1				
<b>일반직 계</b>	<b>405</b>	<b>273</b>	<b>7</b>	<b>24</b>	<b>35</b>	<b>66</b>
4 급	1	1				
4~5급	3	2		1		
5 급	30	16	2	2	2	8
6 급	102	71	2	6	8	15
7 급	125	87	3	8	13	14
8 급	100	69		6	7	18
9 급	44	27		1	5	11
<b>별정직 계</b>	<b>3</b>	<b>3</b>				
6급상당	2	2				
7급상당	1	1				
<b>지도직 계</b>	<b>1</b>	<b>1</b>				
지 도 사	1	1				
<b>연구직 계</b>	<b>1</b>	<b>1</b>				
학예연구사	1	1				
<b>기능직 계</b>	<b>91</b>	<b>53</b>	<b>5</b>	<b>6</b>	<b>26</b>	<b>1</b>
기능6급	3	2			1	
기능7급	9	4			5	
기능8급	14	5		1	8	
기능9급	30	14	3	4	9	
기능10급	35	28	2	1	3	1

## 비용소요 추계서

### 1.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(안 제12조)

### 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용

- 9급 1명 감 → 5급 1명 증(상계조정)

### 3. 비용소요내역

(단위: 천 원)

구 분(예산과목)	소요경비	비 고
<b>총 계</b>	<b>74,447</b> (-32,185)	· 5급(74,447) - 9급(32,185) = 42,262
○ 인 건 비	<b>62,754</b> (-26,788)	· 5급(62,754) - 9급(26,788) = 35,966
- 기본급	36,672 (-12,346)	· 5급(36,672) - 9급(-12,346) = 24,326
- 수 당	26,082 (-14,442)	· 5급(26,082) - 9급(14,442) = 11,640
○ 물 건 비	<b>3,635</b> (-1,895)	· 5급(3,635) - 9급(1,895) = 1,740
○ 이 전 경 비	<b>8,058</b> (-3,502)	· 5급(8,058) - 9급(3,502) = 4,556